#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43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노종면・이기헌・박홍배

문금주 · 소병훈 · 서영석

서미화 · 김영환 · 송기헌

김교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임. 이는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당시, 생 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정도로 책정된 것임.

그러나,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여전히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고려하지 않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9조).

#### 법률 제 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매년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도록 결 정되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수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동부장관은 <u>고용정책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u> </u>
지급액을 결정한다. <후단 신	<u>이 경</u>
<u>설&gt;</u>	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
	이 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